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1. 22.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1
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6
III.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8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	8
②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	12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15
④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	18
⑤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	22
I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27
【별첨1】 국정과제 추진현황	
【별첨2】 4년간 성과/ '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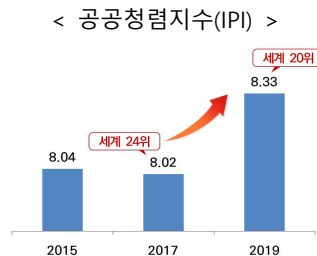
## 1 지속적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 추진실적

- ①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공정과제 발굴·논의 강화(총6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정책방향 제시
  - \* (주요 안건) 분야별 전관특혜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사교육 불공정성 해소 등
  -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12건 제안
- ② (중장기 전략수립)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개혁 추진체계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4월) 수립·이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성과 도출
  - \*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등 4대 분야·총 85개 단위과제로 구성
- ③ (법·제도적 기반 강화) 국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월)으로 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강화
  - \*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18년), 부적절한 공직자 할안장학금 혜택 개선(20년) 등 (행동강령 보완) 이해충돌 방지규정 및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18.4), 갑질금지 신설(18.12)
- ④ (K-청렴 확산)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를 최초의 온라인 회의로 성공적 개최(20.12.1~4), 프로그램·참가지수 역대 최대로 국제 반부패 논의 선도
  - \* UN·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정부, 국제NGO, 다국적기업 등을 포함하는 전 세계 반부패전문가 1만여 명 참석, '서울선언문' 공표

### □ 정책효과

- ① (부패인식지수\*) '19년 CPI 세계 39위, 역대 최고 점수 기록(3년 연속 상승)
  - \* 정부혁신 3대 지수 : 부패인식지수,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OECD 정부신뢰도
- ② (공공청렴지수\*) '19년 공공청렴지수\*(IPI) 117개국 중 20위 기록
  -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하는 국가별(117개국) 부패통제 현황·발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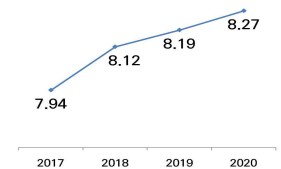
## 2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

###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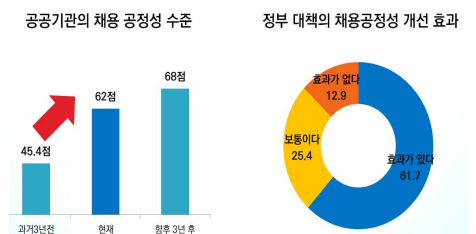
- ① (생활적폐 개선)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 등(9개 과제)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18.12월~, 총 8차)
  - \* (주요 법령개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유치원3법 등 개정(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3법(갑질 근절), 의료법·건강보험법·범죄수익 환수법(불법의료 기관 근절) 등
- ② (채용비리 근절)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채용비위자 징계·처벌,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실시(17년~, 총 3회)
  - \* (채용비위 적발) '17년 338건 → '18년 182건 → '19년 83건으로 개선 추세 (피해자 구제) '17년 3,245명, '18년 49명, '19년 122명(잠정) 채용시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 ③ (공공기관 사규 개선) 국민 생활 점점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한 부패·불공정 제거를 위해 495개 공공기관 사규 3개년 전수 점검 계획 수립·이행
  - \* ('20년) 69개 기관의 8,393개 사규를 전수 점검하여 316건의 개선안 권고
- ④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을 청렴도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하고, 부패 영향평가 시 평가기준에 포함('20.9월~)하여 각급기관 적극행정 유도
  - \* (청렴도 측정) 지방체육회 등 취약분야 진단 강화, '적극행정' 설문 항목 신설 (부패영향평가) 기존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 □ 정책효과

- ① (공공기관 청렴도) 반부패 개혁과 현안 대응 노력의 결과, '20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



- ② (채용 공정성 개선)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인식이 개선('17년 45점→'19년 62점)되고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다'(61.7%)고 평가



\* 권익위 채용공정성 조사, '20.5월

### ③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지속 강화

#### □ 추진실적

① **(보호 범위 확대)**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으로 추가('19.10)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신고자 보호 범위 대폭 확대('18.5, '20.11.)

\* 공익신고 대상법률 : ('11) 180개 → ('16) 279개 → ('18) 284개 → ('20) 467개

② **(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18.5, '20.6) 및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을 통한 신고자 신분노출 원천 차단

\* (존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5년/ 5천만원

③ **(보호·보상 제도 강화)**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20억→30억), 긴급구조금·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등

\*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최대 3천만원 부과

④ **(적극적 보호·보상)** 4년간('17~'20년) 205건 보호, 보·포상금 195억원 지급, 법 위반자 고발·징계요구 35건, 이행강제금 8건 부과

\* 보호건수 : ('17) 17건 → ('18) 35건 → ('19) 72건 → ('20) 81건

\* 보·포상금 지급액 : ('17) 42억원 → ('18) 55억원 → ('19) 43억원 → ('20) 55억원

#### □ 정책효과

① **(인지도 상승)**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및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지속 상승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 ('17) 30.6% → ('18) 38.7% → ('19) 44% → ('20) 49.2%

② **(신고 활성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결과, 각급기관으로 접수되는 공익신고 건수 증가, 3년간('17~'19) 총 615만건 접수

\* 공익신고 접수건수 : ('17) 168만건 → ('18) 166만건 → ('19) 280만건

③ **(수입 회복·증대)** 3년간('17~'19) 공익신고를 통해 8,250억원 이상의 국고·지자체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발생

\*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금액 : ('17) 3,401억원 → ('18) 2,607억원 → ('19) 2,242억원

### ④ 국민중심·현장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

#### □ 추진실적

① **(적극적 국민고충 해소)**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적극 조사·처리

\*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선제적 운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신설('20.10.) 등

②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 여러 기관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

\* '19.10월 개소 이후 30,989건의 민원상담 처리, 이 중 80.1% 상담 해결

③ **(행정심판 처리)** 4년간('17~'20년) 행정심판 사건 총 95,189건 처리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0,538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18.11)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18.5), 간접강제제도('17.10) 도입

#### □ 정책효과

① **(권익구제 강화)** '4년간('17~'20년) 총 66,401건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 중 9,695건을 인용해결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구제 강화

\*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아닌 사안이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익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 ('17) 211건 → ('18) 238건 → ('19) 316건 → ('20) 433건

② **(사회갈등의 선제적 해소)** 집단민원의 적극적 조정·중재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

\* '17~'20년 총 241건의 집단민원에 대해 복합적 이해관계를 조정해결

#### < 주요 집단민원 조정 사례 >

▲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및 매각 요구' 해결('20.8.4.) ⇨ 537명의 주민 숙원 해결

-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조달청, 캠코, 양구군과 법무부 TF 구성
- 국유화 및 수의매각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
  - (대상) 대상토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경작하는 자
  - (매각범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세대당 3만㎡ 초과 금지, - (매각대금) 감정평가액

▲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요구' 해결('20.10.28.) ⇨ 한센인촌 139명의 숙원 해결

- 경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참여
  - 노후 집단거사 45동 및 슬레이트 철거,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 주택정비 등 거주요건 개선
  - 친환경 농작물 재배 등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기반 마련, 요양원 및 양로원 등 복지시설, 생태공원 등 주민편의 공간 조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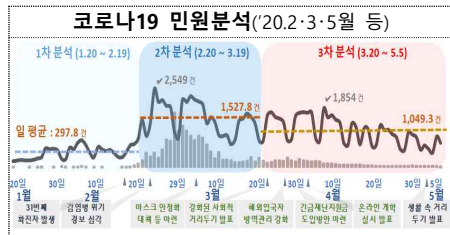
## 5.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개선

### □ 추진실적

- ① (공정·포용지원 제도개선 추진) 국민 생활 속 불공정 및 청년체감 공정과제 발굴, 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개선 권고
  - \* 최근 4년간('17~'20) 총 218건의 공정·포용분야 제도개선 권고('20.12월 기준)
- ② (국민 소통·참여 기반 확대) 반응형 웹기술을 통한 국민신문고 이용 편의성 개선, 유사민원사례 자동제공, 국민 관심분야 맞춤형 추천
  -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전면 개편, 소통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 개인화서비스('20.2월) 등
- ③ (빅데이터 분석·활용체계 마련)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이슈민원 분석, 빅데이터 개방·결합·협업 및 뉴스·SNS 등 분석범위 확대
  - \*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개통('19.1월), 지역별·분야별 민원현황, 키워드 트렌드, 맞춤형 통계정보 등 10종의 데이터는 오픈 API로 개방

### □ 정책효과

- ①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소통 및 정책환류 활성화
  - (소통·참여) 민원답변 원문 27만건 공개(271만회 조회), 민원·정책 Q&A 68만건(2억 2,500만회 조회) 등 국민궁금증·불편의 선제적 해소
    - \* 국민생각함 참여(회):('16) 1.6만 → ('17) 6.4만 → ('18) 16.4만 → ('19) 23.1만 → ('20) 35.8만
  - (정책환류) 국민안전·사회현안 관련 민원 분석 및 정책개선으로 데이터 기반의 책임행정 구현
    - \* 코로나19 민원 모니터링 분석(총 30만건) → 어학성적 제출연장(3.20), 마스크 반출 예외허용(4.5) 등 68건 제도개선
- ② 교육·채용 등 불공정·부패관행 개선 및 국민불편의 근원적 감축
  - (불공정·부패) 생활 속 불공정 및 부패 사각지대 통제시스템 강화
    - \* 대학입시전형료 폐지·인하('18.), 퇴직자단체와 수익계약금지('19.10월), 대학내부 감사시스템 구축 대학평가 반영('20.8월) 등 제도개선 완료
  - (국민불편)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합기도학원('19.6월)·어린이스포츠클럽('20.5월)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 소상공인 수도·가스요금 한시적 감면납부·유예('20.6월~) 등 제도개선 완료



## 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 국가 혁신·도약의 토대로서 반부패·공정 기반 강화 필요

-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인된 공적 제도의 투명성 및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도약을 모색할 시점
- 특히,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엄단 및 불공정·특권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적극적 대응 필요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비상 체계 가동

-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고용·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코로나 양극화(corona divide)\*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절실
  -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
- 특히, 청년세대는 일자리 감소와 함께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 증가에 직면해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 예상
  - ※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층이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과의 주요 희생자로 발생 내내 이어질 상흔을 입어 '락다운(lockdown, 봉쇄) 세대'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20.5월)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전략적 대책 수립 필요
  - ※ '20년에 최초로 국내 사망률이 출산율을 역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년 이후 10년이 대응책 마련의 골든타임
-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변동에 대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 발굴·개혁 시급

## 2 업무추진 방향

◇ 반부패 개혁 완수로 국가청렴도 도약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범국가적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

**비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목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국민고충·사회적 갈등 최우선 해결

주요계획	정책과제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li> <li>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li> <li>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li> </ul>
②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li> <li>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li> <li>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li> </ul>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先 보호-後 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li> <li>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li> </ul>
④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li> <li>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li> </ul>
⑤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li> <li>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 완성</li> </ul>

## III.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 1 개요

- 흔들림 없는 반부패·공정개혁 추진으로 국가청렴도 및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높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
  - ※ 국가청렴도(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 ※ 부패인식도('20년) : 일반국민의 48.4%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9년 比 14.6%p 개선)
- 반부패·공정개혁의 완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정책 역량을 집중
  - ⇒ '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위한 권텨점프 달성

####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1) 부패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 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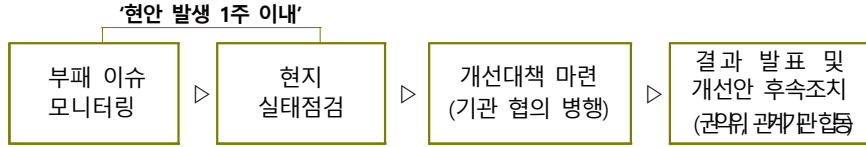
- (협업체계 구축)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공수처 내부 청렴정책 이행 지원
  - ※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 추가(「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2.10. 국회 통과)

협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공수처로의 고발·이첩·송부</li> <li>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확인 시 권익위에 통보토록 협업체계 구축, 구조적 부패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li> </ul>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수처 자체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감독</li> <li>소속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연 2시간) 이행 관리</li> </ul>

-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대응 강화**

- (현안 대응)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정책수단 및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즉시 대응체계 가동,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현안의 경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실태 점검 결과 및 관계기관 합동 개선대책 발표 추진

- (사실확인 기능 보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통해 신고 사건에 대한 대응력 강화,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자료·의견제출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제출 '20.6.25), 부패혐의 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자료·의견제출 요구(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20.11.17)

□ **지자체·공공기관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 (취약분야 집중점검) 지방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집중적 실태점검을 실시(격월), 고질적 부패관행을 개선  
\* (예시) 민간위탁 업무에 공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 지자체·지방의회 수의계약 체결 위반 현황, 공무원 특혜채용 실태 점검 등
- (공공기관 사규 점검)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3개년 계획('20~'22)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9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민간과의 계약·위탁 등 접점 분야에서 직권·재량남용 소지가 있거나 소극 행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중점 점검·개선
- (평가 확대) 대국민 접점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수준 및 반부패 노력도 진단·평가 강화  
※ 소규모 기초의회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사·공단(철도·교통시설관리 등)의 청렴도 측정 확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기초지자체 확대('20년 : 인구 50만 이상 → '21년 : 40만 이상)
- (행동강령 이행 강화)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지방의회(13개) 대상 조속한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주요내용) 수의계약 체결 등 선출직 공직자 위반 빈발 행위,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겸직 및 소관 상임위 활동 관련 이해충돌 사례 중심

(2)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입법화**

- (입법 추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6.25. 국회제출)」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 적극 지원, 쟁점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쟁점사항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례분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보완 필요사항(예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방식)은 의원입법 지원
- (공감대 확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터뷰, 기고,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전개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입법 완비) ①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②공직자의 민간 부문 청탁 금지\*\* 등 법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 추진  
\* 정부입법절차 추진 중('21년 초 국회제출), \*\*박영순의원 대표발의('20.8.19.)
- (과태료 부과 누락 등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권익위가 담당하도록 법 개정 추진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11.17.)  
※ 현재는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 등에 차이 발생
- (실태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이슈,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예시) 학교 차지·불법찬조금 수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수련원 등 휴양시설 이용 특혜 제공, 체육회의 종목단체 회비 부당 사용 등 금품등 수수 관련 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사전심사제 도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사전확인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추진(「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법 개정 전이라도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각급기관의 사전 취업심사 요청 시 '취업제한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토의견 제시 등 적극 지원
- (관리 사각지대 개선) 비위면직자 발생시 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시 비위면직자 확인 의무화  
※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여 위반자 양산을 방지

### (3)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로 재정누수 방지

- **(합동 점검단 구성)** 코로나19 지원금 등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 부정청구 취약분야 집중 점검(2~12월)
  - ※ 코로나19 지원금, R&D(상반기), 지방보조금(하반기) 등 분야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
-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 기관별 공공재정 현황 및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금액, 환수율 등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 **대국민 공개**(3월~)
  -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기능을 탑재, 운영
- **(적용대상 확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공공계약까지 포함** 되도록 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실효성 확보
  - ※ 정책연구용역 실시(2~6월), 법 개정안 마련·국회 제출(12월 예정)

#### □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 정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국민 일상 속 불공정 해소**

분 야	개선과제(예시)
불합리한 관행·유착	-군납계약의 경쟁입찰 확대 등 폐쇄지역에서의 특혜·독점 및 이해충돌 방지
	-하도급 계획서 사전심사 도입 등 <b>관급공사 감리제도 불공정 개선</b>
재정집행 실효성 제고	-정책자금 중복·반복지원 방지, 부실 심사 및 감독 방지 등 관리 강화
	-재량사업 내역 공개 의무화 등 <b>지방의원 포괄사업비 투명성 제고</b>
일상 속 불공정 개선	-시설면적·설립요건 강화 등 <b>요양원·요양병원 공공성 강화</b>
	-적격심사 보완, 불법행위 등록기관 통보 등 <b>공동주택 비리 방지</b>

#### □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향상

- **(정기조사)** '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1년 중, 1,516개 기관), 신규채용·정규직 전환과정의 비위, 제도개선 이행실태 등 중점 점검
- **(수시점검)** 채용 요건 일방변경, 채용 특혜 발생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즉시 조치 해결
  - ※ 필요 시 기재부·행안부·고용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2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 1 개요

-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부패·청렴 문화의 확실한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건
  -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10점 상승시 1인당 GDP 성장률은 0.5%p 증가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3년 단축(서울대학교, '17.12월)
- ⇒ 범정부 차원의 청렴정책 추진을 넘어, **미래세대 청렴인식 제고** 및 기업 등 민간분야의 **공정성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1)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 □ 반부패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 **(반부패 총괄기구 위상 재정립)** 위원회 조직을 **부패방지 중심으로 개편**하고,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 집중
  - ※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중('20.6. 정부안 제출)

< 주요 내용 >

- **(조직 개편)**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관명칭을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권익위 → 국무총리,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
  -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 신고사건의 이첩·고발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의견·자료제출** 요구 기능 명시
  - **(반부패 민간협력 강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시 국민참여 활성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또는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역할 강화
    -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 및 현안이슈 신속대응을 위해 실무협의회 활성화 (현안발생 시 수시 운영)

- (감사관회의 확대) 이슈별·계기별 감사관회의 운영 확대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에 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대응 역량 강화
  - ※ (현행) 연1-2회 정례회의 → (확대) 제도개선 권고,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공유 등 수시 개최

#### □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청렴도측정) 청렴도측정 제도('02년~) 도입 20주년 계기, 국민이 공감하고 공직자가 변화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 추진
  - ※ 측정 실효성에 따라 측정주기를 다양화 하는 등 대상기관 재검토, 부패취약업무 신규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 객관적 지표 강화 방안 등 검토
- (부패방지시책평가)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하고, 부패 현안 발생 시 대책마련·시행 여부를 가감점으로 반영

### (2)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 □ 청렴교육의 전방위적 확대를 통한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제고

- (선출직 공직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리더십 향상 및 청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등 청렴교육 지원 확대
  - ※ 행안부 등 관계부처, 지방의회와의 MOU체결, 간담회 등을 통해 청렴교육 협의·지원
- (고위공직자)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직 대상 이해충돌, 갑질 등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자료 제작 및 청렴연수원 교육이수 확대
  - ※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방법,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고위직 맞춤형 사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
- (他교육훈련기관)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목에 청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확대 추진
  - ※ 청렴교육과정을 단독과정으로 운영 또는 타 과정에 청렴과목 편성토록 협의(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민관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확대 추진)
- (미래세대) 향후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초·중등 교과과정 또는 자유학기제에 연계한 청렴교육 확대 방안 마련
  - ※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청렴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 소단원으로만 구성

#### □ 청렴교육의 법적·제도적 인프라 공고화

- (교육 이행력 확보)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이수현황 등 결과공개 근거, 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후속조치 근거 신설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20.10.)
- (청렴교육 확산 기반 마련) 학생·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 근거 등 교육확산 기반 마련,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또는 「청렴교육지원법(안)」제정 등 방안 검토 및 추진
-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 청렴교육정책 및 청렴콘텐츠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설, 교육시설 증축 등 교육운영 여건 개선 추진

### (3)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 □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전략적 대응) CPI 평가 시 우리나라의 실제 청렴수준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관련 의견(객관적 실태지표 추가)을 TI에 제시
  - ※ 국제예산협약체(IBP) 예산투명성 지수, TRACE International의 뇌물 매트릭스, UN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지수 등 부패 관련 평가지표 반영 협의 추진
- (IACC 성과 홍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20.12월) 개최 성과를 G20, OECD 등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CPI 제고 계기로 활용
  - ※ IACC 회의 내용과 성과, 온라인화상회의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영문백서 제작·홍보
- (반부패 우수사례 전파)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 기업인 및 평가기관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 ※ (예시)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등 K방역 성과, 청탁금지법 5주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10주년 운영 성과 등

#### □ 국민과 함께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 강화
  - \* (예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부패방지체계 확립, 지자체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



- (청렴경영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렴경영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반부패프로그램 발굴·지원  
\* 공공기관 및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 시 청렴경영 교육 실시

###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1 개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20.11.20.)으로 보호 대상 '공익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신고자보호 관련 법·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미흡
  - 신고자 보호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신분공개, 처리절차 지연 등 보호·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계속
- ⇒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1) 先보호-後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보완·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향

현행	개정안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필요	일시정지 결정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정지기간 최대 45일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음' 필요	해당 요건 삭제

- (사전보호 전담제) 잠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신분 보호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직원 지정·운영
- (신고자 신속 보호)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사 범위 확대\* 및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 (부패신고) 현행 : 관계기관 → 개선 :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공익신고) 현행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개선 :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신분공개 피해 방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위원회가 관련 기사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구조금 지원 확대)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소송에 대해 구조금(변호사비용 등) 지급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28.)
- (부패신고 보상 확대) 신고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권익위 외에 수사·조사기관·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 현재는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

##### □ 신고자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

- (이행절차 간소화)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간소화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위원회 심의절차를 2회에서 1회로 축소
- (이행력 확보)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신설  
\* (현행) 매년 2회, 이행 시까지 회당 최대 3천만 원 → (개선) 최대 5천만 원
- (징계제도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여부 실태조사 후 징계제도 개선 권고  
※ 실태조사(2~5월), 개선안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6~8월), 개선 요청(9월)

**(2)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사례홍보 강화

-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기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패·공익 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분야(예시)	신고대상	시기
권력형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등	상반기
정부보조금	코로나-19 지원금, 연구개발비, 지방보조금 등	3~5월
신규 공익침해행위	병역법, 대리점법, 수입식품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 행위	5~6월
안전 분야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9~10월

\*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 시 집중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사례홍보 강화) 중요사건 조사결과,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 처벌사례, 고액 보상사건 등 홍보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병행

-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 주요 부정청구 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실시

\* 어린이집연합회(보육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유가보조금) 등 공공재정 수급 직종별 협회·단체 대상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 계기 사회적 인식 제고

- (우수사례 선정) 법 시행('11.9.30.) 이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보·포상 사례(가칭)' 선정·발표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 (선정방법) 각급기관·시민단체 신청을 받아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선정

- (토론회 개최) 법 시행 10년 성과분석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통해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추진

\* 공익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구분,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기능 강화 등

**4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 요구  
※ 통계청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인 49.7%'에 달함(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12.)  
⇒ 권익위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해, 민생 현장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권익구제로 국민고충 최우선 해결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

□ 소외·취약계층 고충해소 및 긴급 고충현안에 대한 대응 강화

- (이동신문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전방위적 확대 운영

< '21년 이동신문고 운영 방안 >

유형	대상	운영	횟수
지역형 이동신문고 (소외 지역)	· 전통시장,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 등 코로나19 피해 심각지역 및 농·산·어촌 등	·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 코로나 관련 고충 중점 청취·해결	· ('20) 33회 → ('21) 40회
맞춤형 이동신문고 (취약 계층)	· 쪽방촌, 노후 임대아파트 등 복지·주거 취약계층	·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열악한 주거환경 등 관련 고충 상담·해결	· ('20) 45회 → ('21) 64회

⇒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신문고'를 '20년 78회에서 '21년 104회로 대폭 확대(33.3% ↑)

- (기업고충 해소)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청취로 위기 기업 맞춤형 고충해소 추진

\* (대상) 자동차 부품, 기계 소재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농공 단지 등  
 (내용)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종합적·효과적 해결방안 제시  
 (운영)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12회,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10회(총 22회)

- (고충현안 긴급대응)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나 코로나19 등으로 단기간에 현장 민원 급증 시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운영' 등 즉각적인 해결 체계 가동

\* 태풍·집중호우, 산불·대형화재, 화학물질·환경오염 등 각종 사건·사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국선대리인 신청 소득기준 완화(270만원→300만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도 지원, 국선대리인 수 확대\*\*(70명→100명)

\* 일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을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하여 지원('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전문성·사건해결 노력도 등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위촉·포상 등 실시

- (신속성·인용률 제고) 단순·반복적 심판청구의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위법' 뿐 아니라 소극행정 등 '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도 적극 인용

\* 실제 권익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한 반복청구 등에 대해 각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11월)

□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풀(Pool) 확대

- (전문인력 보강) 법률가 위주로 구성\*된 현행 비상임위원에 환경·산업·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가 위촉 추진(65명→150명)

\* 현재 65명의 비상임위원 중 의사(14명) 및 변호사·법대교수(47명)의 비율이 94%에 달함

※ (참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150명의 비상임위원을 위촉·운영

- (사건 검토 강화) 복잡·난해한 전문사건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 증원(3명→4명, 행정심판법은 4명 이내로 규정)

※ 중앙행정심 상임위원 3명(1인당 연평균 6,174건, 5개년 평균),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8명(1인당 연평균 1,442건), 소청심사위원회 4명(1인당 연평균 199건)으로 구성

(2)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국민신문고·110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민원·상담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 (이용기관 확대) 공공기관·사립대학의 국민신문고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중앙·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수요조사 후 단계별 이용 확대 (사립대) 328개 전체 사립대학 민원 접수·처리 시 국민신문고 이용('21.하)

- (소극행정 예방강화) 소극행정신고센터 접수 민원\*의 유형, 빈발 분야, 발생원인, 처리실태 등을 종합 분석해 예방대책\*\* 수립

\* △ '19.3.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6만여건 중 각 기관 감사실에서 소극행정으로 판단한 건은 약 2%(1,240건)에 불과 △ 유형별 판단기준 확립 필요

\*\* 발생원인(제도미비, 관행, 업무행태 등)에 따라 제도개선, 교육, 컨설팅 등 실시

- (민원서비스 개선) 이송사유 등 '민원이력 조회기능'을 신설('21.3.)해 처리 회피·지연을 방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 제공(~'21년말)

\* '민원 관련 정책알림 서비스' 개요

- (필요성) 민원은 법령에 따라 7~14일 이내에 답변·종결 처리되나, 이후 실제 민원과 관련된 제도·정책 변경 등 실질적 조치는 피드백이 되지 않는 한계
- (주요내용) 민원 신청 내용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사항, 추진현황 등 정책정보를 수집해 SNS·이메일을 통해 민원인에게 자동 제공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AI자동상담\*을 통해 24시간×365일 중단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23)하고, 범정부 안내시스템 '국민비서'와도 연계

\* 상담 빅데이터(음성→문자데이터 변환) 분석·활용으로 빈발·단순 질의 등은 AI 자동상담(음성·채팅)으로 신속·정확하게 안내

※ 전자정부사업('22년 대상 사업 선정('21.1.6.))과 권익위 자체사업으로 '22년도 예산 동시 확보 추진(180억원)

< 추진 일정 및 예산(총 298억, 2개년) >

<b>'22년 1차 구축(180억)</b>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b>시스템 통합 안정화</b> (부처, 소속기관 등 41개)	→	<b>'23년 2차 구축(118억)</b> AI도입 등 기능 고도화, <b>시스템 통합 확대</b> (부처, 산하기관 55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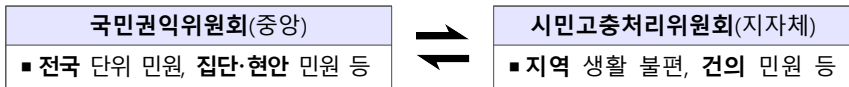
\* '20년 BPR/ISP(7.1억) 및 75개 정부 콜센터(통합대상 96개 중 78.1%) 공문 동의 완료

□ 권익위의 전문 읍부즈만 제도 활성화로 고충해결의 사각지대 해소

- (경찰읍부즈만 내실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 읍부즈만 역할\* 수행
  - ※ 경찰분야 민원 접수 현황 : '18년, 733건 → '19년, 1,579건 → '20년, 1,784건
  - \* 불합리한 수사절차·행태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적극 처리
- (검찰읍부즈만 도입)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행태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추진
  -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7조 소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검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추진중('20.11월 입법예고 완료,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중)
- (특별분야 TFT 운영) 기업, 금융 등 국민적 요구가 높거나 고충민원이 증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충처리 역량 집중
  - ※ 기업고충민원팀('17.12월~), 금융고충민원팀('20.1월~) 등 역할 강화

□ 중앙(권익위)-지방(지자체) 간 분업·협력을 통한 촘촘한 고충 해결

- (분업) 국민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가 민원 특성에 따른 처리영역 전문화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결



- ※ 분업 표준모델을 개발해 우수 운영 지자체(울산광역시, 경기 파주·시흥시 등)와 시범운영 실시('21.상) 후 전국 확대 추진
- (지원·협력)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지방 간 일관성 있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 향후, 지자체 외에도 민원이 많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전담 창구로서 '기관별 읍부즈만' 설치 추진(중장기)
-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현재 40개 지자체 중 13개 설치)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발의(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9월)
- \*\* (교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역량 교육 제공 (컨설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예정 지자체에 대한 조례제정·운영 컨설팅

5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1 개요

-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직접적 국민 참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소통 창구에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민신문고 민원) '18년, 473만건 → '19년, 799만건 → '20년, 957만건 (국민생각함 참여) '18년, 16만회 → '19년, 23만회 → '20년, 35만회
- ⇒ 범정부 정책 소통·참여 플랫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래로부터 민원과 고충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제도 구현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

□ 집단민원 중점 해결 및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 (집단민원 해결) 다수기관이 관련돼 민·관, 민·민 갈등이 장기간 해결 되지 않고 표류중인 집단민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해결방안 마련
  - 특히, 100인 이상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에 이송하지 않고 권익위가 직접 조정 추진
  - ※ '20년 한 해 총 8,447건의 집단민원이 제기(중앙부처 1,206건, 지자체 7,059건), 이 중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1,837건(21.7%)
  - ※ 전국 빈발 집단민원 사례

-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입주 후 생활불편
- 무단폐기물 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 대상 처리비용 전가
- 전국 한센인촌 주거·환경 사각지대 개선 등

- (법제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민원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 ※ 「집단민원조정법안」 2건 국회 발의(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안 '20.8월,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 '20.11월)

< 집단민원조정법안 주요내용 >

- (조정 전문인력 확충) 민간 조정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을 조정인으로 위촉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민원(100인 이상)을 전담 조정 해결
- (조정 대상 확대) 민원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권익위에 소관업무와 관련한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선제적 집단민원 대응)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민원신청 전이라도 실태를 확인, 조정 절차에 착수하여 분쟁·갈등 확산 방지

□ 주요 현안민원에 적극 대응

- (현안민원 해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부처 관련 민원, 중대 현안 민원 등은 신속히 조정·해결하여 갈등 확산 사전 차단
  -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관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언론공표, 국무·차관회의 보고 등을 통해 이행력 확보
- ※ '21년 처리예정 주요 현안 민원

-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헬기사격 반대 및 사격장 폐쇄
- 완공 후 미사용 통영 소매물도·제승당·비진외항 3개 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 전국 지하철도 침수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2)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 완성

□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열린 공론의 장 운영) 주요 정책이슈·갈등현안을 적시에 포착해 국민생각함 토론의제로 제시하고, 수렴된 국민의견에 기반한 정책 변화 유도
  - ※ 온라인(국민생각함 토론·설문조사) - 오프라인(간담회·현장 의견청취) 동시 대응을 통해 현안별로 다양한 국민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분석해 정책제안 실시
-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도 및 체감도 제고

< 국민생각함 기획토론 과제(예시) >

- (환 경) 2050 탄소중립 추진 협업(수소충전소 구축 전략 수립 등)
- (보 건) 공공의료 강화(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 (복 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확산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과학기술)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디지털 포용 정책)
- (교 육)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 (노 동) 특수고용근로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생 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이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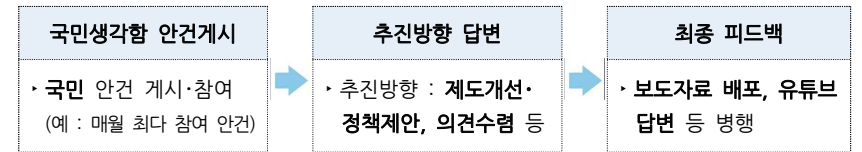
- (정책환류 강화) 국민이 참여·공감하면 권익위가 개선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프로젝트 추진

- 제도개선 권고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정책 반영 및 기관 자율 개선을 위해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제안 제시

※ 쟁점과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조정

<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프로젝트 개요 >

· 매달 다수 국민 참여 등 요건 달성 시 추진방향을 조속히 답변, 제도개선 등 피드백



- (참여 방식 다양화) 청소년·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사회현안 관련 찬/반 설문 및 공공캠페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확대

※ (청 소 년) 교육청·학교와의 협업으로 '청소년 정책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대 학 생) '국민생각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정책참여' 전국 확대 (일반국민) '사회현안 3초 공감(찬/반, 택1 등)' 이벤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다이어트 등 공공캠페인 추진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 (기획분석)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및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방향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

< 민원분석 주제(예시) >

분 야	분석 주제
사회 안전망	· 실업급여·긴급생활안정자금 등 개인·소상공인 지원 개선 · 위탁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포스트 코로나	· 코로나19 속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개선 · 배달앱,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문화·소비 관련
탄소중립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이용 불편 개선 ·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 (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산·학·연)이 민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 '21년 :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 → '22년 : 플랫폼 시범 운영 → '23~'24년 : 플랫폼 고도화 등 확대·활성화

<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개요 >



\*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디지털 뉴딜 사업(2-4-2.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 (데이터 연계 강화) 민원 데이터와 주요 공공데이터 간 융복합\*, 학계·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국민건강(복지부), 자동차(국토부 등), 소비자안전(공정위), 인구(행안부), 사회보장(복지부), 음식물·쓰레기(환경부) 등 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 (예시)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20.6)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실질적 이행력 제고

○ (제도개선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4대 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 대응 등 주요 국정방향 관련 정책·제도 적극 개선

< 제도개선 주제(예시) >

분야	문제점	개선과제(예시)
4대 안전망 강화	<생계> ·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세금으로 부담금 납부	⇒ 의무고용률 평가 확대 등 장애인 고용 촉진제도 실효성 제고
	· 청년공제 재가입 불가로 불리한 근로조건 감내	⇒ 재가입 요건 확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정성 제고
	<의료> · 최저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압류, 분할납부 승인 취소	⇒ 압류 예외요건 확대 등 건강 보험료 체납자 반복민원 해소
	· 장기기증 부족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및 불법거래	⇒ 장기기증자 건강검진 확대, 예우 강화 등 장기기증 사후관리 개선
	<주거> · 주택 매매가·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가중	⇒ 거래금액별 보수요율 산정 등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자격기준 불합리	⇒ 자격기준 현실화 등 청약·공공 임대주택 공급 관련 불합리 개선
사회 변화 대응	<교육> · 초등돌봄교실 법률근거 미비로 안전 문제, 프로그램 질 저하	⇒ 법률근거 마련, 부처별 연계 강화 등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광고 심의불가	⇒ 심의기준 마련, 플랫폼 책임강화 등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지자체 입지규제 국민고충	⇒ 태양광 발전 설치·운영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단속방안 모호	⇒ 지자체 등록, 인식표(번호) 부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강화

○ (이행력 제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현황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①(언론보도 등 문제포착) 권고 미이행, 부패·고충 지속발생 → ②(권익위) 이행조치 요구 → ③(소관기관) 조치계획 제출 → ④(권익위) 이행점검 → 우수사례 홍보

※ '20.6월 기준 제도개선 이행률은 83.9%로, 이행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차관회의 보고, 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노력 강화

## I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2021년 권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

공수처와 함께 부패 엄단



#####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탁금지법 보완



#####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청렴교육·청렴경영 강화



#### 2 先보호-後검토, 신고자 보호의 골든라임을 지키겠습니다.

##### 선제적·적극적 신고자 보호

용기있는 신고자를 최우선 보호



##### 신고자 경제적 지원 확대

구조금 지원 확대·보상 강화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집중신고·국민 인식 제고



#### 3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 소외·취약계층 고충해소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 사회갈등 현안 해결

집단민원 증점 해결



#####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활성화



## 붙임1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① 적폐의 철저히하고 완전한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li> <li>○ 범정부 반부패 백서 제작('18.12.)</li> <li>○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추진과제(4대 전략 50개 과제) 이행점검 실시('19.7, '20.1, '2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과 추진성과 확산을 통해 범정부 반부패개혁 완수</li> </ul>
②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주재 공정·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17.9, '18.4, '18.11, '19.6, '19.11, '20.6.)</li> <li>-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로 확대·개편(대통령훈령 제414호, '20.1)</li> <li>○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li> <li>○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및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19.2, '20.7)</li> <li>○ 보조금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19.4.)</li> <li>○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 탈세 등 9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18.12출범, '19.3, '19.6, '19.9, '19.11, '20.3, '20.6, '20.9, '20.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의 지속 운영으로 적극적인 공정·반부패 정책 추진</li> <li>○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li> <li>○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및 정부대책 발표(매년)</li> <li>○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재정부패의 근원적 차단</li> </ul>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자 보호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고('19.4),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19.12)</li> <li>-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범위 확대('18.5, '20.5),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li> <li>-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인단 구성('19.7.) 및 증원('20.11.)</li> </ul> </li> <li>○ 국민중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국민모니터단 출범('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업을 통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li> <li>-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반부패 정책 제안('18.3, '19.4, '19.7, '19.10, '19.12, '20.5, '20.10, '20.11.)</li> <li>- 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사회 협약 체결 추진('18~'20, 17개 지역, 9개 분야, 720개 기관 동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부패·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강화</li> <li>○ 청렴사회협약 체결·이행 확산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청렴·공정 문화 정착 추진</li> </ul>

## 붙임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p>《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채용비리 근절)</b> “내가 이 회사에 부족한 인재라고만 생각했다. 한동안 좌절하다가 스펙을 더 쌓기 위해 다시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모두가 선망하는 OO공사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던 A씨, A씨는 탈락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공사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로 간주되어서 구제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다음단계 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약 3,000여 명의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함</li> </ul> </li> <li>○ <b>(공익신고 처리)</b> B씨는 자동차 엔진결함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비용 절감을 위해 리콜 등의 조치 없이 무상 보증·수리만을 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하였다. 이 신고로 인해 39만여 대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 조치가 실시되고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한편, 신고자 B씨도 국민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2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li> <li>○ <b>(집단민원 해결)</b> 국내 섬들 중 유일하게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소형 어선을 이용함에 따라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던 군산 비안도의 주민 C씨는 2019년 12월, 18년 만에 정규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 부안-비안도 주민 간 갈등으로 십수년 간 정규 배편이 운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권익위가 끈질긴 설득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격적인 도선 운항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li> <li>○ <b>(제도개선)</b> D씨는 몇 년 전 중고로 산 노후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지만, 지난 달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동안은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권익위의 권고로 2020년부터는 거주요건이 완화(6개월 이상 거주)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기폐차 후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새차를 구매하는 부담도 줄었다.</li> </ul>
<p>《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공기관 사규 개선)</b> 공공기관인 OO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실업은 전자 인지세 부담이 감소하고,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이 사라져 기업 운영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예전에는 전자 인지세를 F실업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권익위의 권고로 OO공사의 사규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E공사와 F실업이 균등하게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 개선이 완료되면 이 같은 혜택을 보는 국민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li> <li>○ <b>(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b> 자영업자인 G씨는 최근 청구한 행정심판의 진행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법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받게 되었다. 권익위가 2021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운 상황에서 큰 근심을 덜게 되었다.</li> </ul>